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2. 18. 2018고단1833, 1928(병합), 4098(병합), 6391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채희만(기소), 이영훈(공판)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, 공소외 4, 공소외 5, 공소외 6, 공소외 7, 공소외 8,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